##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487

발의연월일: 2024. 8. 1.

발 의 자: 장종태·김선민·문진석

이기헌 • 이해민 • 황정아

이정문 · 황운하 · 김원이

이재관 · 김 윤 · 김남희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7년 말까지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었음. 이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예상한 적자전환 시점인 2026 년보다 약 2년 정도 빠른 것임.

이에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일몰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08조의 2제1항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4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의2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를 "전전년도 결산 상"으로, "예상 수입액의"를 "수입액의"로, "14에 상당하는"을 "17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		
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u>예산</u>	부지원) ① <u>전전</u>		
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u>년도 결산상수입액의</u>		
<u>예상 수입액의</u> 100분의 <u>14에</u>	<u>17에 해당하는</u>		
<u>상당하는</u> 금액을 국고에서 공			
단에 지원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08조의2의 개	<u>&lt;삭 제&gt;</u>		
<u>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u>			
지 효력을 가진다.			